

[] 안전진단대행업
[] 안전관리대행업 양도 · 양수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일	
양도인	상호(명칭)			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(법인) 등록번호		
	주소				
양수인	상호(명칭)			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(법인) 등록번호		
	주소				
사업 내용	사업의 종류		등록번호		
	양도 · 양수 가격				
	양도 · 양수 사유				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20조제2항 또는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[] 안전진단대행업, [] 안전관리대행업의 양도 ·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양수인)
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)

해양수산부장관(○○지방해양수산청장) 귀하

첨부서류	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 ·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

신고인

처리기관: 해양수산부(안전진단대행업의 경우) 또는 지방해양수산청(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)